

의안번호	2201148
의 퇴 인	김원이의원
회 답 일	2024.07.11.
추계번호	24C108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7조 (보조금 등)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의 인구감소지역 ¹⁾ 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에는 국가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현행법 제17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 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出捐)하거나 운영에 필 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7조 (보조금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가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보조금 등(안 제17조)

- 개정안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에 국가가 운영비를 지원할 경우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기존 지방의료원의 운영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지방비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²⁾, 국가가 지방의료원의 운영비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 현
행 지방비 투입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국비로 전환되는 것으로 재정지출
총량 면에서는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음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
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함[시행일 2021.6.9.]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출연)하거나 운영에 필
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지급으로 지방의료원이 의료서비스 및 공공보건의료사업 기반 확충³⁾을 위해 인력 및 기능 보강 등을 추진하는 경우, 재정지출 총량의 증가분만큼 추가재정소요 발생 가능
 -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으로 인하여 지방의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현행은 국비로 지방의료원 건립, 시설장비 확충 등에 대해 일부 지원(국고보조를 50%)하고 있음

[표 1] 지방의료원 국비 지원 예산액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년	2023년	2024년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69,055	61,295	48,748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보건 프로그램사업	690	690	131
지역거점공공병원 파견의료 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5,500	6,000	8,000

자료: 보건복지부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운영비를 지원함에 따라 지방의료원이 추가로 수행할 사업 및 규모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나, 현 시점에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의료원의 사업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의 추계가 불가능함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지출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도록 규정함

1.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이하 “공공보건의료사업”이라 한다)
3. 삭제<2015.1.28.>
4. 의료인·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5.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7.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부표] 지방의료원 현황(2024년)

시도	개소수
서울	1개소
부산	1개소
대구	1개소
인천	1개소
경기	7개소
강원	5개소
충북	2개소
충남	4개소
전북	3개소
전남	3개소
경북	4개소
경남	1개소
제주	2개소

자료: 보건복지부

국회예산정책처	사회비용추계과
과장	이진우
추계세제분석관	임슬기
연락처	02-6788-4740
	sg.lim@assembly.go.kr
